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6년도 주요 강조사항

- 2026년도 제2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결과 반영(2026. 3. 27. 실시)
 - 합격(예정)자 발표 방법 일원화

기존	변경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60일간] • 자동안내전화 1666-0100[4일간, 유료]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60일간]로 일원화

-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추가

- 스마트 안경 추가

- 상담관련분야 내 교육학 분야 인정기준 명확화

※ 2025년 제3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의결 결과 반영(2025. 5. 26. 실시)

구 분	인 정 범 위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대학원의 경우	① 학과명(교육학과 제외),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②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학과명만으로도 인정 가능
	③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세부)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분야별 1개씩 4개 과목이 전공으로 이수 또는 개설)로 인정받아야 함

- 상담관련분야 판단 기준: 학위명이 아닌 **학과 또는 전공명**으로만 판단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판단 기준
 - **분야별 1개씩 과목 4개를 채택전공으로 이수 또는 개설되어 있을 경우**만 인정

- 본인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후(자가진단 또는 유선 문의) 필기와 면접 응시 권고(응시자격 미충족 시 필기와 면접 모두 합격 취소됨)

※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2027. 3. 12.)**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예정자 발표
제1차 (필기) 시험	(정기접수) 5일간 '26. 7. 20.(월) 09:00 ~ '26. 7. 24.(금) 18:00 (빈자리접수) 2일간 '26. 9. 3.(목) 09:00 ~ '26. 9. 4.(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26. 9. 12.(토)	'26. 10. 21.(수)
제2차 (면접) 시험	'26. 11. 2.(월) 09:00 ~ '26. 11. 6.(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26. 11. 30.(월) ~ '26. 12. 5.(토) ※ 세부 일정은 기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6. 12. 23.(수)
응시 자격 서류 심사	○ 서류심사 대상자 :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서류제출 · 심사 기간 : '27. 3. 2.(화) 09:00 ~ 3. 12.(금) 18:00 [토 · 일 제외] ※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27. 3. 12.(금) ○ 서류제출 · 심사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7개 기관 ○ 서류제출 · 심사 세부사항 : '4. 응시자격 서류심사' 참조 ○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 '27. 3. 31.(수)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택순**으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 미충족 시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1차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 면제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첫 날 09:00부터 시작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정기 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며 타 결제수단 가능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필기) 시험 과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급 수	시 험 과 목		
	구 분	교 시	과 목
1급 (5과목)	필수(3과목)	1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2과목)	2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中 택 2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급 (6과목)	필수(4과목)	1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선택(2과목)	2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中 택 2
3급 (6과목)	필수(4과목)	1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필수(1과목) 및 선택(1과목)	2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中 택 1

- 시험과목 중 법령과목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함.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참조]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나. 제2차(면접) 시험 항목

평 정 요 소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5점)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5점)
3. 예의·품행 및 성실성(5점)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5점)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5점)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1] 면접시험 채점표 양식] 참조

다.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제2차(면접)	2교시(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면접시험(수험자 1조(2~3명) : 면접위원 3명 대면 면접)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제2차(면접)	2교시(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면접시험(수험자 1조(2~3명) : 면접위원 3명 대면 면접)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제2차(면접)	2교시 (필수 및 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면접시험(수험자 1조(2~3명) : 면접위원 3명 대면 면접)

라. 시험시간

구 분	제1차(필기) 시험				제2차(면접) 시 험
	교 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급 (5과목)	1교시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09:00까지	09:30~10:45 (75분)	1조당 10~20분 내외
	2교시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 상담 中 2과목	11:30까지	11:40~12:30 (50분)	
2급 (6과목)	1교시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09:00까지	09:30~11:10 (100분)	
	2교시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中 2과목	11:30까지	11:40~12:30 (50분)	
3급 (6과목)	1교시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09:00까지	09:30~11:10 (100분)	
	2교시 (필수 및 선택)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中 1과목	11:30까지	11:40~12:30 (50분)	

4. 응시자격 서류심사

가. 응시자격 기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별표 3]

※ 서류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 [별첨] 202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대학원 수료는 학위취득이 아니므로 응시자격 충족 불가**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27.3.12.)**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및 범위

- 인정기준

구 분	인 정 기 준
상담관련분야	상담관련학과(전공)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또는 이 단어들의 조합된 학과(전공)명일 경우 응시자격 충족 가능 (단, 조합된 학과(전공)명에 10개 학과(전공)명 이외의 추가 문구가 있을 때에는 학과(전공)명 만으로는 인정 불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관련분야로 인정이 불가한 학과(전공)명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과목을 4개 이상 채택(개설)하고 있는 학과(전공)일 경우(아래 ② 참조) 응시자격 충족 가능

※ 상담관련분야 인정 예시: 학과 또는 전공명이 **청소년+상담학, 아동+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인정불가 예시: 학과 또는 전공명이 **기독교+상담학, 가정복지+상담학, 미술치료+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생략 가능

②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 면접원리, ③ 발달이론, ④ 집단상담, ⑤ 심리측정 및 평가, ⑥ 이상심리, ⑦ 성격심리, ⑧ 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 상담교육, ⑩ 진로상담, ⑪ 가족상담, ⑫ 학업상담, ⑬ 비행상담, ⑭ 성상담, ⑮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분야별 인정 과목 리스트는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동일유사교과목]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2026. 2월 기준" 참조	

- 인정범위: 학위명이 아닌 **학과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2025년 제3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의결 결과 반영(2025. 5. 26. 실시)

구 분	인 정 범 위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대학원의 경우	① 학과명(교육학과 제외),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②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학과명만으로도 인정 가능
	③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세부)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분야별 1개씩 4개 과목이 전공으로 이수 또는 개설로 인정받아야 함)

※ (예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의 경우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이므로 전공명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어교육전공이므로 상담관련분야로 인정 불가**.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분야별로 1개씩 4개 과목이 전공으로 이수 또는 개설)로 인정받아야 함

-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기준
 - 동일(유사)교과목 리스트의 과목명과 성적증명서 또는 커리큘럼확인서 상 과목명 간 완전히 일치해야 함
-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과목명에 “~(개)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생략)된 경우 또는 “의, 및, 과, I·II, 1·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는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 가능(이외의 생략 또는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예시) 부부치료연구 → 부부치료로 인정 가능(11번 가족상담 분야)
 - 과목명이 순서가 다른 경우
 - (예시) 가족 및 부모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인정 가능(11번 가족상담 분야)
- 인정과목 리스트는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 “ [동일(유사)교과목]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2026. 2월 기준 ” 엑셀 파일 참조
 - 해당 엑셀 파일에 과목명이 없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절차

구 분	세 부 절 차
서류 준비	① 동일(유사)교과목 이수확인서 1부 ②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검토의견서 1부 ③ 강의계획서 1부 ※ 학과장 직인 필수 ※ 관련 양식은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동일(유사)교과목]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2026. 2월 기준” 붙임자료 참조
서류 제출 및 접수	해당 대학(원)에서 전자문서 송부(해당 대학(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접수는 상시로 받으며, 심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에서 연 2회 실시(반기별 1회) ※ '26.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7~8월 중 심사, '26년 12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27년 1~2월 중 심사 각 1회 실시 ※ '26년 제25회 시험의 경우, 2027년 1월까지 심사 완료 및 승인된 과목에 한해서만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서류 송부	접수된 서류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인정 여부 심의	자격검정위원회를 개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하여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여부 심사 및 확정
심의 결과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여부 결과 통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최신화 및 수험자 안내	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리스트를 최신화 한 후 큐넷 홈페이지 게재 및 수험자 안내

※ 상반기, 하반기 동일(유사)교과목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실시

- 상담관련분야 충족을 위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급수별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상담관련분야	※ 학과 또는 전공명 명시 필수 ① 급수별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②-1 (과목 이수 4개 분야 이상 충족) 성적증명서 ②-2 (과목 이수 + 과목 개설로 4개 분야 이상 충족) 성적증명서 + 공단양식 전공학과 커리큘럼확인서 ②-3 (과목 개설로 4개 분야 이상 충족) 공단양식 전공학과 커리큘럼확인서 ※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성적증명서 상 과목 구분이 전공으로 명시되어야 함 ※ 공단양식 전공학과 커리큘럼확인서는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격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참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서류 제출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다. 학력 서류심사 관련 유의·강조사항

- 대학원 수료는 학위 취득이 아니므로 응시자격 충족 불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 관련 과목을 해당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 주전공 과목과 합산 불가하며, 해당학과에 개설된 경우를 인정하지 않음
- ※ 일반선택, 교양, 교직, 계절학기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인정 가능한 과목명이 성적증명서 상 전공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전공학과 커리큘럼확인서(공단양식)를 활용하여 제출 가능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원본서류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 상 번역된 과목명과 동일(유사)교과목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과목명이 불일치 할 경우 인정 불가하며, 번역된 성적증명서 상에 과목 구분이 전공으로 명시(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등)되어 있어야 함

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 기준 및 범위

○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응시 등급	상담 유형	연간(1년 기준) 총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1년 간 유형별 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상담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참조

○ 상담 유형 별 인정 기준

구분	급수	인정기준
개인상담	1,2,3급	대면 개인상담 경력(전화 및 인터넷 상담 인정 불가)
집단상담	1,2급	비구조화,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_참가 인정 불가
	3급	비구조화 및 구조화,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리더, 코리더) 또는 참가한 경력(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
심리검사	1,2,3급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 심리검사 인정 가능 리스트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동일한 검사임에도 실시기관마다 검사명이 다를 수 있음)

※ 상담 유형별 세부 기준은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상담 유형별 세부 기준

구분	급수	세부 기준
개인상담	1,2,3급	- 대면 개인상담만 인정(회상 대면상담 인정 가능 기간(’202 ~ ’22.4) 제외) - 상세기록은 내담자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25회씩(총 50회) 진행했을 경우, 2장 작성 - 개인상담기록과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사례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와 상세기록지 수가 일치해야 함 ※ 예) ‘개인상담기록’ 표에 총 10사례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 상세기록’은 총 10쪽 작성(각 사례번호는 일치) - 상세기록지는 페이지별로 상담을 실시한 장소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함 -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 (기관별 직인 필수)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 예)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집단상담	1,2,3급	- 구성원 수는 5명(리더, 코리더 포함) 이상으로 구성 - 상세기록은 내담집단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집단 3개를 대상으로 각각 8시간씩(총 24시간) 진행했을 경우, 3장 작성 -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 (기관별 직인 필수)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예)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 진행방식,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
	1,2급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만 인정
	3급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 인정
심리검사	1,2,3급	- 전국 표준화 검사 또는 투사검사만 인정 - 상세기록은 사례(검사방법)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10개 검사방법을 진행했다면, 각 검사방법 별로 한페이지 작성 (총 10사례 인정 가능) - 여러 검사를 묶어서 진행하여 한 사례로 인정도 가능 ※ 예) 검사방법 4개를 활용한 심리검사에 대하여, 상세기록지 1장에 작성할 경우, 1사례로 인정 -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8줄 이상 작성 -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표, 그래프 등은 첨부 필수 아님

○ 상담 실무경력 인정 기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비영리 법인 포함) 상담기관	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등),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국방부(군 상담 부대 및 기관), 성평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Wee프로젝트(스쿨, 클래스, 센터 등), 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등) 등
민간기관	상담 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한 후 상담 활동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또는 컨설턴트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일반 기관 ※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

※ 상담기관 인정 최종결정을 위해 기관 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음

○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한시적 인정 기준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초 발표한 '20.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4월까지 적용 가능**
- 1년 기준 실무경력 중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 가능
- 화상으로 실시한 대면상담 실무경력만 인정(**전화, 인터넷 상담 인정불가**) 단, 심리검사는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인정 불가

상담유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50회 중 35회까지 인정	20회 중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중 17시간까지 인정	6시간 중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

마. 상담 실무경력 서류심사 관련 유의·강조사항

- 1년(12개월) 설정은 수험자가 설정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한하여 설정된 1년(12개월)이 1년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됨
- 내담자는 모든 사람(청소년, 성인, 아동, 학부모 등)이 가능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1년 경력으로 인정**되며, 실무경력 제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는 공단 양식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상 **공단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서류심사 일정 및 대상자

- 심사대상 :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
- 심사기간 : 2027. 3. 2.(화) 09:00 ~ 3. 12.(금) 18:00 [토·일 제외]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가 제출·승인되어야 제1차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에서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나. 서류심사 기관 및 제출 방법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심사기관

기관 및 부서명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고객센터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051-330-1816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71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94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042-580-9132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 고객센터를 제외한 위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에서만 심사하며, 이외의 기관에서는 심사하지 않음(제출 착오로 인해 서류심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 공단 본부(울산)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 심사기관이 아님을 유의

※ 응시자격 서류는 위 기관 중 본인이 제1차(필기) 시험에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행기관에 제출 권고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온라인학력증명(학력서류에 한함) 중 택1

○ 방문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기우편 : 서류심사 마감일('27. 3.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증'이라고 반드시 표기

○ 온라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 사항만 가능(일부 학교에 한함)

※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가능 대학(원)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답변 게시글 참조

※ 온라인 제출 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라. 제출 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격정보 - 자료실 참조

○ 등급별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기간 중(휴학기간도 포함) 전공학과 커리큘럼 확인서(공단 양식) 제출

※ 성적증명서, 커리큘럼 확인서에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교과목이 전공으로 4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자격 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별첨]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고

※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2027. 3. 12.)

6.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합격(예정)자 결정 기준

○ 제1차(필기) 시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 불합격(무효) 처리함

○ 제2차(면접) 시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함.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8. 시험의 일부면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필기) 시험 : 2026. 7. 20.(월) 09:00 ~ 7. 24.(금) 18:00

- 빈자리 원서접수 : 2026. 9. 3.(목) 09:00 ~ 9. 4.(금) 18:00

○ 제2차(면접) 시험 : 2026. 11. 2.(월) 09:00 ~ 11. 6.(금)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첫 날 09:00부터 시작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며 타 결제수단만 가능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응시자 공통사항]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 단체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필기) 시험 : 26,000원, 제2차(면접) 시험 : 16,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쿠팡계좌이체, 간편결제)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60% 환불	·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	·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 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을 한 경우(사후환불 제외) · 시험에 결시한 경우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PC버전)으로만 가능(큐넷 앱으로는 불가)

※ 이외에 사후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의 가족(배우자·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사람(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이 사망하여 장례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첨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송신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근무명령 공문,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시험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 신청에서 신청**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angdamsa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단, 빈자리(추가)접수 기간에는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마. 시행기관(필기, 면접,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 및 부서명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고객센터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응시자격 서류) 02-2137-0542 (필기) 02-2137-0558 (면접) 02-2137-0555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필기) 051-330-1827 (응시자격 서류, 면접) 051-330-1816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71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94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042-580-9132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 기관별 연락처는 인사이동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정기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정기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환불이 불가하며,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험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 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 시행 기관(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또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Q-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참고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3) 하지(장애 정도 구분 없음, 척추 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4) 복합장애 [상지 + 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①,②,③ 호 중 하나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 ②, ③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 ②+④, ③+④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신장장부·요추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 ②, 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 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 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 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0.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기간

○ 제1차(필기) 시험 : 2026. 9. 12.(토) 14:00 ~ 9. 18.(금) 18:00 [7일간]

나. 가답안 확인 및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11.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일시

○ 제1차(필기) 시험 : 2026. 10. 21.(수) 09:00

○ 제2차(면접) 시험 : 2026. 12. 23.(수) 09:00

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시

○ 발표일자 : 2027. 3. 31.(수) 09:00

※ 응시자격 서류심사 승인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됨

다. 합격자 발표 방법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1666-0100)를 통한 합격(예정)자 발표는 폐지

※ '26년 제2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결과 반영(2026. 3. 27. 실시)

라.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 발급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7. 3. 31.)부터

12.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 자격연수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수대상 : 2026년도 제2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연수 미수료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연수방법 : 비대면(실시간 화상) 교육, 대면 교육
- 연수 시수: 총 101시간 (집합연수 56시간 + 연수과제/이러닝 연수 45시간)
- 연수 비용: 330,000원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youthcounselor.or.kr:446>)에서
자격연수 세부 일정 및 장소 안내 예정

나. 자격증 교부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중 자격연수 수료자

다.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명의

- 교부명의 : 성평등가족부
- 교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교부방법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
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
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youthcounselor.or.kr:446>)를 통해 공지

13.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1차(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2차(면접)시험의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응시
자격 서류심사 기간 내 서류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1차(필기)시험
최종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서류 승인자 중 면접합격자는 자격연수 대상자임)**
 -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취소 및 필기(면접)시험 불합격 처리
 - ※ 면접 미응시자 또는 면접 불합격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회차에 한
하여 필기 면제 가능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 2027. 3. 2.(화) 09:00 ~ 3.12.(금) 18:00
2.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가짜·복사물 등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3.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
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매 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 매 교(차)시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바일 신분증)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
증(①,②,③ 인정발급처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윌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
타뱅크, 농협은행), ④ 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
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앱· KB스
타뱅크 국민지갑· 우리WON뱅크 윌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 (모바
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
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윌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
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
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엔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윌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페이,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한 상황으로 시험포기 없이 시험 중에 퇴실하려는 자는 퇴실 가능하지만, 해당 교시에 재입실은 불가하고 일반응시자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퇴실 전 작성한 답안까지 인정)
 -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3]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스마트 안경,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통산·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쿼트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3. 수험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소속, 이름, 나이 등), 소속 등을 발설해서는 안되며, 부정행위(명함 배부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즉시 중지하고 퇴실조치 합니다. (적발 시 무효처리(0점) 또는 부정행위 처리 될 수 있음)
4.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에는 시험 관련 자료·서적 등을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5. 면접은 면접위원 3인, 수험자 2~3인 1조 면접으로 진행(10~20분 내외)되며, 면접 순서는 수험자가 직접 추천한 비번호 순서에 따른 조편성 순서로 진행됩니다.